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알 권리

- MSDS 도입을 중심으로 -

장 근 섭
노 동 부

I. 머리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0,000여종으로 추정.
 - 이 중 허용농도 고시등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700여종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

- 매년 1,0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제조·사용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능력 자체도 이를 수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정책적 대안 검토의 원칙은,
 - ① 행정규제의 요인보다는 민간의 창의성·능동성을 배양.
 - ②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바탕을 둬.
 - ③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여건 보장.
 - ④ UR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GR, BR등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처.
 - ※ ILO 170호 조약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조약)

II.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물질 표시제도

· 유해물질 용기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명칭, 성분,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 특정화학물질 제 1·2·3류와 유기용제 제 1·2종 등 103종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81조·92조.

※ 1991.9.2 유해물질 표시 기준고시.

·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실제적으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가 요망 됨.

III. 물질별 안전보건자료(MSDS)제도 도입

· 이상과 같은 정책적 필요성과 산업발전에 따라 정부는 MSDS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이를 통해 노·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함.

- 사업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총아로서 기대되고 있음.

제도도입의 당위성과 함께 정부는 정책의 타당성, 수용가능성, 사업장에서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94 법령 개정 (MSDS 도입의 근거규정 삽입).

- '94-'95

=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 및 타당성, 수용가증성 검토.

= 시행세칙 등 구체적 규정, D/B 등의 네트워크 구축

- = 사업장, 근로자장 등에 제도도입에 따른 홍보
- '96 MSDS제도 시행 예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82조

시행령 제31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제31조 관련)

1. 노말렉산
2. 니트로글리콜
3. N-N-디메틸아닐린
4. N-N-디메틸포름아미드
5. 1,4-디옥산
6.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7. 3,3-디클로로벤지딘
8.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9. 1,2-디클로로에탄(아염화에틸렌)
10.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1. 마젠타
12. 망간과 그 화합물
13. 메틸부틸케톤
14. 메틸시클로헥사놀
15. 메틸에틸케톤
17. 메틸이소부틸케톤
18. 바륨염(바륨설페이트를 제외한다)
19. 베타-프로피오락톤
20. 벤젠
21. 1-부타놀

22. 2-부타놀
23. 불화수소
24. 부롬화메틸
25. 사염화탄소
26.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을 제외한다.)
27. 시안화나트륨
28. 시안화수소
29. 시안화칼륨
30. 시클로헥사논
31. 시클로헥사놀
32. 스티렌
33. 삼산화비소
34. 아세톤
35. 아크릴아미드
36. 아크릴로니트릴
37. 1-알릴옥시-2,3-에폭시프로판(알린글리시딜에테르)
38. 알킬수산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한다)
39.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40.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41.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트(셀로솔브아세테트)
42. 에틸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43. 에틸에테르
44. 에틸에테르
45.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46. 연 및 그 화합물
47. 오라민
48. 오산화바나듐
4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50.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51. 요오드화메틸

52. 염소
53. 이소부틸알콜
54. 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55. 이소프로필알콜
56. 이황화탄소
57. 질산나트륨
58. 질산칼륨
59. 중크롬산과 그 염 및 크롬산과 그 염
60. 초산메틸
61. 초산부틸
62. 초산에틸
63. 초산이소부틸
64.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65. 초산이소프로필
66. 초산펜틸
67. 카드뮴 및 그 혼합물
68. 카르보닐니켈
69. 콜타르
70.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71. 클로로메틸에틸에테르
72. 클로로포름
73. 클로로벤젠
74. 크레졸
75. 크실렌
76.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77. 톨루엔
78.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79. 톨리렌다이소시아네트
80. 트리클로로에틸렌
81. 1.1.1-트리클로로에탄

- 82.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 83. 파라-니트로플로로벤젠
- 84. 페놀
- 85. 펜타클로로페놀(PCP) 및 그 나트륨염
- 86. 포름알데히드
- 87. 황화나트륨
- 88. 황화산소
- 89. 황화수소나트륨
- 90. 황산디메틸
- 91. 1.1.1.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시행령 제81조(표시방법)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는 당해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을 인쇄하거나 인쇄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표시사항중 성분의 함유량은 함유된 중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벤젠은 함유된 용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 또는 표찰의 양식·규격 및 색상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2조(표시자의 성명등)

법 제39조 제5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정화학물질 제 1·2·3류와 유기용제 제1·2종 등 103종 규정

< 보전기준[별표6]특정 화학물질등의 종류(제148조 관련) >

1. 제1류물질

가.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나.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다. 염소화비페닐(P.C.B)

라.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마. 디아니시딘과 그 염

바. 베릴륨

사. 벤지딘염산염

아. 벤조트리클로리드

자. 석면

차.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카. 자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유리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 제2류 물질

가. 벤젠

나. 황화수소

다. 브롬화메틸

라. 3,3'-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마. 베타프로피오락톤

바. 시안화수소

사. 아크릴로니트릴

아. 아크릴아미드

자. 에틸렌아민

차. 염소

카. 염화비닐

타. 카르보닐니켈

- 파.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 거.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 너.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 더. 황산디메틸
- 러. 요드화메틸
- 머. 불화소소
- 버. 시안화나트륨
- 서. 시안화칼륨
- 어. 콜타르
- 저. 니트로글리콜오.(92.3.21 삭제)
- 처. 마젠타
- 커. 오라민
- 터. 망간과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한다)
- 퍼. 삼산화비소
- 허.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은 제외한다)
- 고.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한다)
- 노.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 도. 오산화바나듐
- 로. 중크롬산과 그 화합물
- 모. 카드뮴과 그 화합물
- 보. 크롬산과 그 염
- 소.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나트륨염
- 조. 톨루엔 2,4-다이소시아네이트
- 초. 가목 내지 러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 및 처목 내지 조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비율이 1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코. 머목 내지 저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비율이 5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3. 제3류 물질

- 가. 암모니아

나. 염화수소

다. 이산화황

라. 일산화탄소

마. 질산

바. 포름알데히드

사. 포스겐

아. 황산

자. 페놀

차.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카. 자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